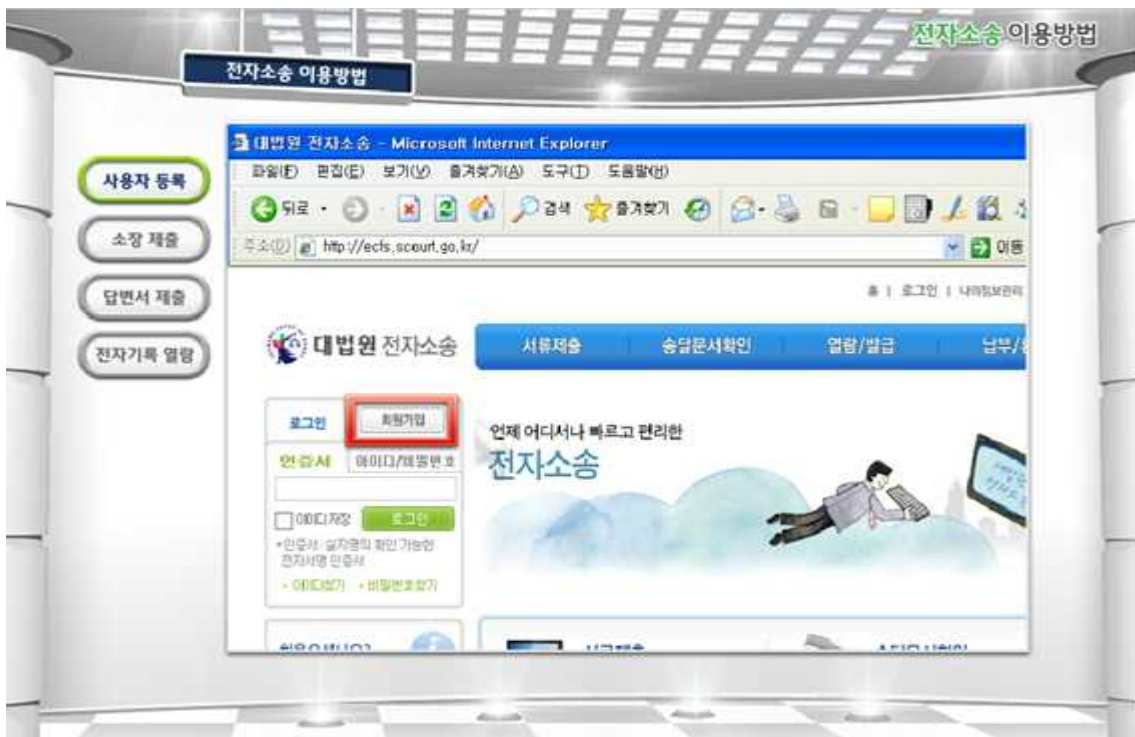




전자소송 이용방법

1. 사용자 등록

▣ 전자소송 홈페이지 홈 화면



- ❖ 민원인 : 판사님! 2011년 5월 2일부터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복잡하나요?
- ❖ 판사 :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한두 번만 해보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죠. 보시는 화면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전자소송”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 ❖ 좌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회원유형을 선택한 후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법인, 대리인, 법무사 등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 - 개인회원으로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유형선택 화면



- 판사 :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는 것과 같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 확인을 합니다. 기본정보를 넣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소송 이용방법

사용자 등록

소장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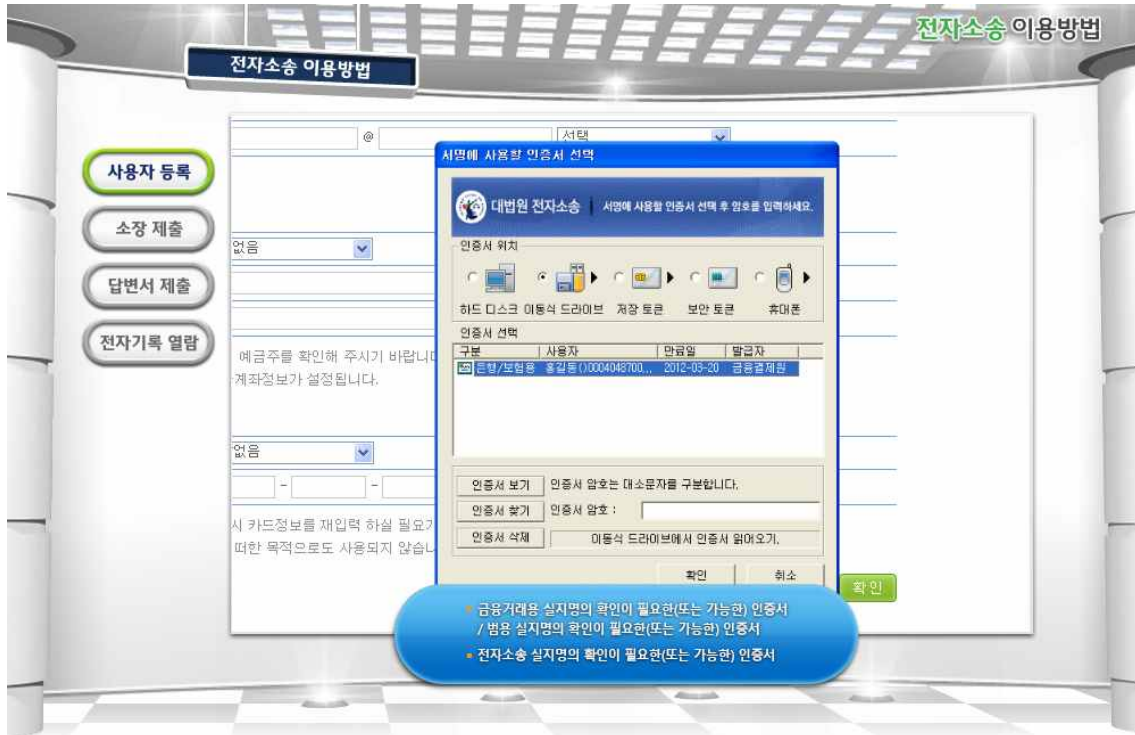
답변서 제출

전자기록 열람

● 기본정보	
* 아이디	<input type="text" value="mintdew23"/> <input type="button" value="중복확인"/> (7~14자의 영문자와 숫자조합, 대/소문자 구분, 한글사용불)
*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8~15자리의 문자와 숫자조합)
* 비밀번호확인	<input type="password"/>
* 비밀번호 힌트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아래 작성하신 질문과 답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질문과 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input type="text" value="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답변 <input type="text" value="파랑"/>
* 이름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800101"/> - <input type="password"/>
* 국적	<input type="text" value="한국"/>
* 주소	<input type="text" value="137"/> - <input type="text" value="750"/>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찾기"/> <input type="checkbox"/> 주소가 외국인 경우 체크 후 우편번호 조회 없이 직접 입력
주소	<input type="text" value="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input type="button" value="대법원"/>
* 송달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주소와 동일

- 판사 : 먼저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신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원 기본정보와 소송비용 환급계좌 및 결제카드정보 등 부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 등록 화면



- 이어서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신분확인과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하라는 창이 뜹니다. 인증서를 선택한 후 암호를 넣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칩니다. 전자소송은 이와 같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장치로 소송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이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 소송에는 금융거래 및 범용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는 물론, 전자 소송전용으로 용도가 특정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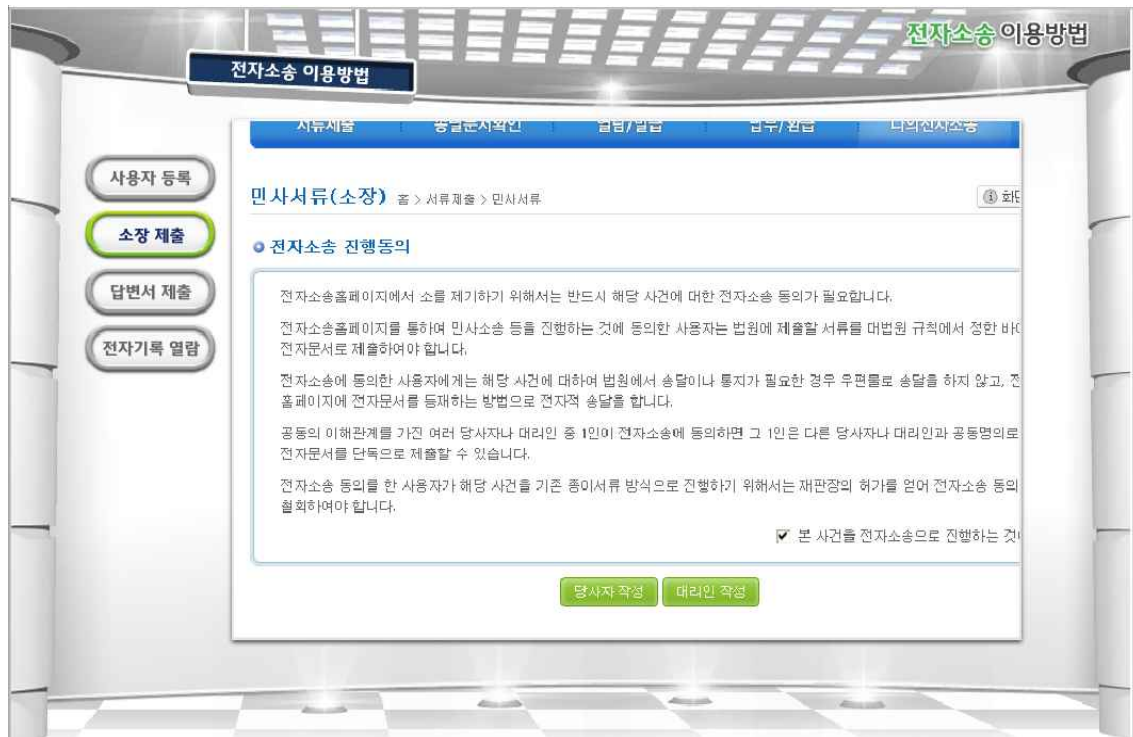
2. 소장 제출

□ 전자소송 홈페이지 홈 화면



- 판사 :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소장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한 후 화면 가운데에 있는 서류제출 민사 소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서류의 종류가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소장' 을 클릭합니다.

▣ 작성 유형 선택 화면



- 판사 :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적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동의이며, 이로써 제출자와 법원 모두 전자적 재판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일 경우는 ‘당사자 작성’ 버튼을, 대리인일 경우는 ‘대리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건기본정보 입력 화면

전자소송 이용방법

1. 사건기본정보 > 2. 당사자입력 > 3. 청구취지/원인 > 4. 입증서류입력 > 5. 첨부서류입력 > 6. 작성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선택	사건명 검색
청구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재산권상청구 <input type="radio"/> 비재산권상 청구	
소가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금액 <input type="radio"/> 토지 등의 평가액 <input type="radio"/>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소가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button" value="소가 산정"/>	(원)

제출법원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input type="button" value="관할법원 찾기"/>
----	----------	--

> 소장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나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제출 법원 등이 존재하므로 관할법원인 출법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건이 이송되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차근차근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화면

전자소송 이용방법

당사자기본정보 초기화

당사자기분 원고 피고

인격구분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소장의 당사자 표시문구 추가 (예) 출결등의 파산관재인

주소

우편번호찾기

주소가 외국인 경우 체크 후 우편번호 조회 없이

송달주소 위 주소와 동일

국적 한국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선택 - -

전화번호 선택 - -

팩스번호 선택 - -

이메일

- 그럼 다음으로 제출자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 등 소송 당사자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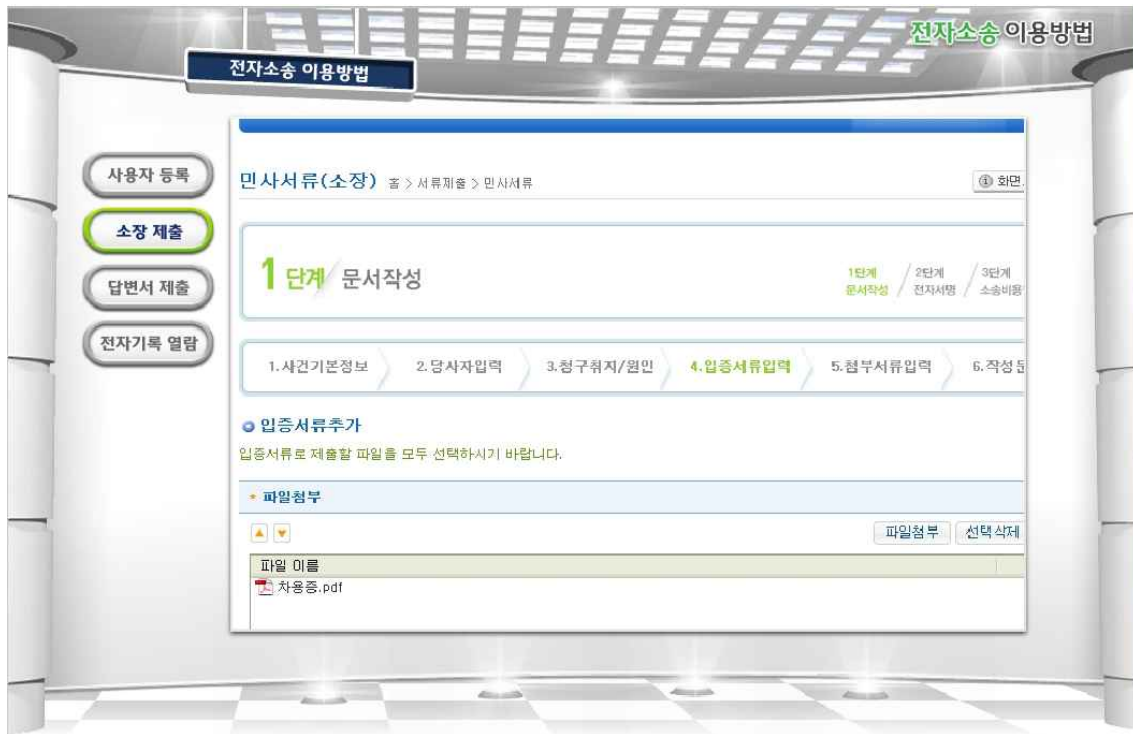


▣ 청구취지/원인 입력 화면

- 다음으로, 당사자가 소송으로 구하는 바를 적는 청구취지와 소송의 이유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화면이 나옵니다. 빈칸에다가 미리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복사, 붙이기 방식으로 작성해 넣습니다. 사건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작성 예시문 가운데 유사한 것을 선택한 다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색하여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는 방법 외에 문서로 작성된 것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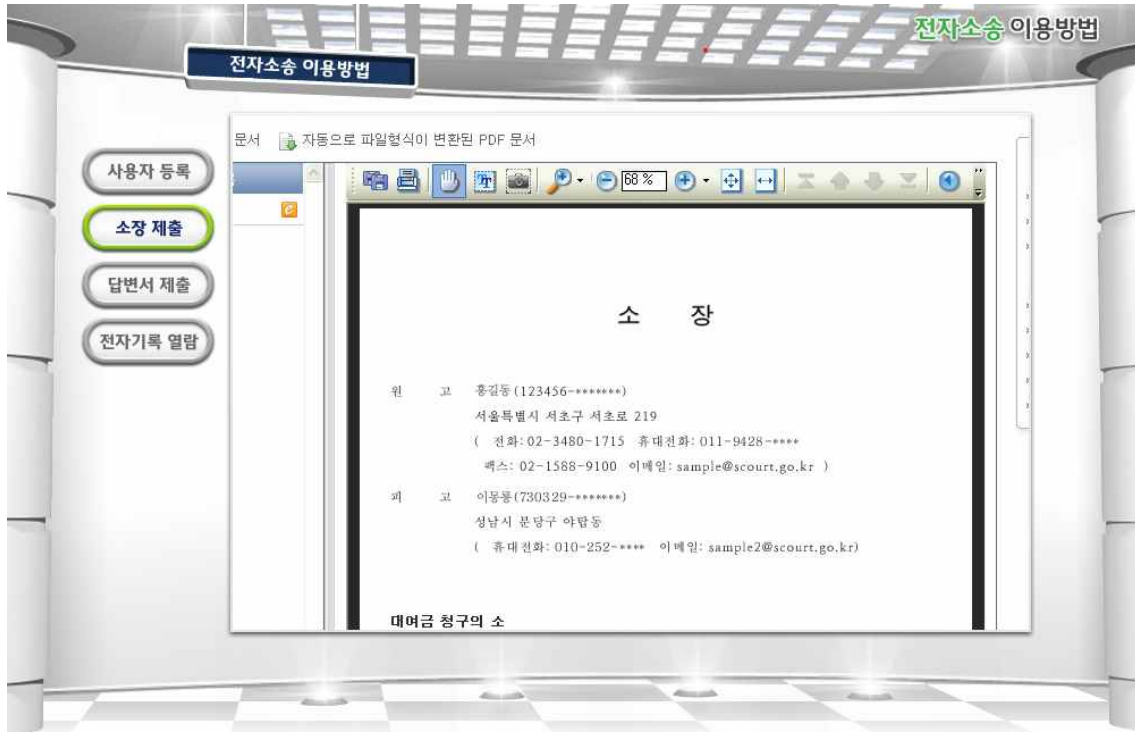


□ 입증서류 입력 화면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작성이 완료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추가합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면 먼저 차용증 등을 스캔하여 PDF파일의 형태로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 가네요. 그밖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첨부서류까지 등록하고 나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완료 화면



- 보이는 바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깔끔한 양식의 PDF 문서가 되어 나타납니다. 작성된 문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출력,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은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므로, 투명도장 또는 전자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하여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을 한 후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인지액, 송달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은행에서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스캔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소장 제출이 완료됩니다.

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주요 사건정보가 기재된 전자접수증이 작성되고, 소장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제출

▣ 전자소송 홈페이지 홈 화면



- 판사 : 이번에는 소장을 송달받는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한 후 화면 가운데에 있는 서류제출 민사소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서류의 종류가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답변서' 를 클릭합니다.

□ 답변서 첨부 화면

- ■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주장서면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지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하고, 분량도 가급적 적정한 한도 내로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출 화면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소송 이용방법

사용자 등록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전자기록 열람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소12345
민사5단독	사건명 대여금 소송
홍길동	피고 이몽룡

구분	서류명	파일명	파일크기
송문서	답변서	답변서.pdf	548.9KB

이전 제출

본 내용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비선언건 (80자 이내)

-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답변서 제출이 완료되는 것은 소장과 마찬가지로입니다.



4. 전자기록 열람

▣ 전자소송 홈페이지 홈 화면



- 판사 : 이번에는 전자문서 열람,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소송 관련 문서가 도착하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세지로 송달 내역이 통지됩니다. 안내에 따라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하게 확인하시려면 첫 페이지에서 “송달문서 확인” 또는 “나의사건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기록의 열람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 나의사건기록열람 화면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소송 이용방법

홈 | 로그아웃 | 나의정보관리 | 사이트맵 | ENGLISH | 화면크기

서류제출 | 송달문서확인 | 열람/발급 | 납부/환급 | 나의전자소송

나의사건기록열람 > 열람/발급 > 나의사건기록열람

소송유형: 전체 | 법원: 전체

접수일자: 2011.02.27 ~ 2011.03.28 | 당일 | 3일 | 1주일 | 1개월

사건번호: 2011 | 가단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접수일자	원고	피고	사건기록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8053 (공통소송 참가자)	미배당	2011.03.28	홍길동	악한자 외 1명	열람
서울중앙지법	2011가소5402 (반소)	미배당	2011.03.24	홍길동	김이름	열람
서울중앙지법	2011가소12345	미배당	2011.03.18	홍길동	이름홍	열람
서울중앙지법	2011가소5297 (반소)	미배당	2011.03.23	홍길동	김이름	열람

- ▣ 나의 사건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싶은 사건기록의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소송기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 ❖ 판사 : 지금까지 전자소송 이용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 민원인 : 네.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깐 빠르고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 판사 : 소송까지 가지않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법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 민원인 : 네.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